

의안번호	제 259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 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박우양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10월 2일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015년” 을 “2020년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2조(생 략)	제1조 ~ 제2조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 ① (생 략)	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5년</u> 까지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연 장할 수 있다.	② ----- <u>2020년</u> ----- -----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[2015-07-24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 
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 
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
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 
있다.